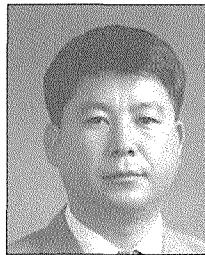


# 주유소 상표표시제 변경내용 및 향후 정책방향



허 남 용

&lt;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서기관 &gt;

## 1. 상표표시제 변경 배경

92년부터 시행하여 오던 주유소 단일 상표표시제가 금년 9월부터 사적계약 방식으로 변경 시행되고 있다. 사적계약 방식이란 한 주유소내에서 종전대로 1개의 상표제품만을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2개이상의 상표제품을 취급할 것인지, 또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취급할 것인지 등을 주유소 업자가 스스로 결정토록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사적계약 방식은 기존 단일 상표표시제를 폐지한 것이라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기존 단일 상표표시제는 우리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였으며, 일본이나 구미국가에서는 존재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제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간 단일 상표표시제가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가 제기되어 왔다. 예를들면, 석유산업의 초기 정착과정에서 유통부문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그결과 기형적인 제도로 왜곡되었다던지, 아니면 80년대까지 상표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인식부족과 제도미흡 등이 굳이 상표표시제를 제도화한 대표적인 배경으로 설명될수 있을 것이다. 사실, 상표권과 관련있는 주유소의 상표표시제는 시장 당사자들의 건전한 시장기능 마인드와 지

적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었더라면 굳이 92년 공정위 고시와 같은 법제화된 제도는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서구제국과 같이 시장기능에 의해 충분히 커버되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단일 상표표시제는 90년대 중반 석유산업 자유화·개방화 및 세계시장의 Globalization 심화추세와 함께 제도존립 자체가 무의미해 지기 시작했으며, 그결과 금년 3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결정으로 사적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 2. 제도적 보완책 및 시장주체의 상표표시 자율기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적계약방식의 상표표시제와 관련하여 그간 전문연구기관 및 시장일각에서는 사적계약의 의도적인 시장실패(혼유 가능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오인 등) 우려를 제기하여 왔으며, 정부에서는 시장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8월25일 공포하였다.

사적계약 상표표시제 시행과 관련한 개정 석유사업법 시행령상의 제도적 보완책은, 첫째, 주유소 시설기준을 보완하여 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 또는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는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공급자별로 구분 설치토록 하여 서로 다른 공급자 제품간의 혼유를 방지토록 하였으며, 둘째, 주유소 상표표시 기준을 보완하여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로 하여금 폴, 캐노피, 벽면 중 하나 이상의 장소와 주유기에 비상표 표시를 하도록 하여 주유소 외부 및 내부에서 소비자 제품선택 오인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은 강력한 페널티(영업정지, 과징금 등)와 함께 운용되므로 시장의 의도적인 불법행위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 〈석유사업법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복수폴 주유소는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석유제품 공급자별로 구분하여 설치토록 의무화
-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는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표시토록 의무화(제32조제5항 신설)
-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의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토록 함(제32조제3항 신설)

상기 제도적 보완책 마련과 병행하여, 시장 당사자들인 주유소협회 및 정유사·수입사들도 사적계약 상표시 제의 조기 정착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8월29일 자율적 상표표시 기준을 마련한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업계에서는 2이상의 상표제품 또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의 구체적인 상표표시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통일된 비상표제품의 표시 로고를 마련하는데 합의하여 향후 비상표제품 판매에 따른 소비자 오인 문제를 없애도록 하였으며, 둘째, “상표표시 자율운영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합의하여 향후 주유소 상표표시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당사자간 자율 조정을 적극 도모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보완책 및 시장 당사자들의 자율적 상표표시 모델 운용 추진 등으로 인해 향후 사적계약 방식에 따른 시장혼란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적계약하에서의 주유소 상표표시 양상〉

구분	표시방법
하나의 상표 제품만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과 동일</li> <li>○ 주유소와 정유사간 계약에 따라 상표 표시</li> </ul>
비상표 제품만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과 동일</li> <li>○ 상표 표시를 하지 아니하며 여러 공급자의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 가능</li> </ul>
2이상의 상표 제품을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풀, 캐노피, 벽면 등 하나 이상의 장소에 각각의 상표를 표시</li> <li>○ 주유기에도 각각의 상표를 표시</li> </ul>
상표 제품과 비상표제 품을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풀, 캐노피, 벽면 등 하나 이상의 장소에 각각의 상표를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표제품(Non-Brand)임을 표시</li> </ul> </li> <li>○ 주유기에도 각각의 상표를 표시</li> <li>※ 비상표제품 표시방법은 주유소협회에서 로고를 정하여 예시로 제시할 계획</li> </ul>

#### 〈시장 당사자들의 상표표시 자율기준 주요내용〉

##### ○ 표시방법

- ① 둘 이상의 상표제품 또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는 해당 영업장소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표·비상표제품을 표시하여야 함
- ②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는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비상표제품의 표시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해당 표시내용에 “비상표제품(Non-Brand)”이라는 문구는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③ 둘 이상의 상표·비상표제품을 표시하는 주유소가 자기의 영업장소내에서 폴사인, 캐노피, 주유기, 기타 영업장소의 벽면 등에 상표·비상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시하는 상표·비상표 각각에 대하여 가능한 한 동일한 수단(유사한 방식 및 크기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④ 유조차 등 운반용구에 대한 표시방법은 공정위 관련법령을 준용

○ 상표표시제의 원활한 운영 및 당사자간의 상표표시와 관련된 분쟁 발생시 공정하고 자율적인 조정을 위한 별도의 상표표시 자율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

### 3. 향후 시장전망 및 정부정책 방향

한편, 금번 사적계약 방식의 도입으로 주유소시장에는 시장경쟁 원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유소시장의 98%를 점유하여 왔던 Brand시장에 Non-Brand의 시장공세가 강화될 전망인데, 향후 주유소시장은 Brand간의 시장경쟁외에 Price Value를 앞세운 Non-Brand가 일정한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의 공급과잉, 수입시장 증대, 환율불안 등 석유시장 여건 변화로 공급자 및 주유소가 공히 채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Cash-bag, Mileage 제도 등 정유사의 對소비자 인센티브 제공 확대 및 정유사·주유소간 거래형태가 기존의 종속적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등 시장구조의 변화로 인해, 단기간 내 복수 공급자제품을 취급하는 주유소수가 급속히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판망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구미시장과 같이 소규모 영세주유소가 쇠퇴하고 대형 하이퍼마켓 형태의 주유소가 등장할 경우 Brand와 Non-brand를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상표표시제가 민간자율의 사적계약 방식으로 변경된 만큼, 정부의 시장개입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사적계약하에서도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기는 당연히 공급자별로 구분 설치되어야 한다. 문제는 상표표시 형태인데, 기본적으로는 최근 정유사, 주유소, 수입사 등 시장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상표 표시 기준을 존중할 것이다. 또한, 자율적인 상표표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장에서의 상표 표시 분쟁시에도 원만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민간자율의 상표표시 운용에도 불구하고 시장실패로 인해 석유유통시장이 혼란에 빠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 정부에서는 고시제정 등을 통해 신속한 시장개입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금번 개정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필요시 정부의 상표표시 시장 개입 근거를 마련한 바 있기 때문이다. ◈